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11시 48분



목차

목차	2
공지사항	3
2017년 노후기관(선외기) 대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	3

2017년 노후기관(선외기) 대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

2017.01.24 조회수 140 등록자 관리자

2017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『노후기관(선외기) 대체 지원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어업인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017. 2. 10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노후기관(선외기) 대체 지원사업 안내

가. 지원대상 : 연안 어업허가 취득 및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으로 선외기 기관이 5년 이상 된 어선(2011년 2월 27일 이전 선외기기관 설치어선) 선외기 어선의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

1) 2015~2016년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기관을 교체한 어업인은 제외함.

2)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, 선외기 기관 내구년수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사업신청 불가함

(기관내구년수기준일 : 2016. 2. 28기준) - 어선원부 확인

3) 사업선정자중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자(다만, 동사업 선정자가 당해 연도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포기시는 사업가능)

나. 사업비 지원조건 : 시비20%, 자담 80%(지원기준 한계 초과시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)

다. 처분제한 기준 : 본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어선은 2022년까지 매각, 양도, 교환, 대여 담보제공이 제한됨

라.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선적증서, 어업허가증(관리선지정증)

어선검사증서 사본

마. 접수처 : 읍·면은⇒읍·면사무소, 동지역은⇒시 수산경영과(☎3923)

바. 사업계획서 작성시 수협중앙회와 체결된 2016년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에 준하여 업체명, 기종, 모델, 규격, 단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.

사. 1인 2척의 어선을 소유하고 있을시 1척에 한해서 1건만 신청 할 것

붙임 노후기관(선외기) 대체 지원 사업 시행 지침 1부. 끝.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📄 노후기관(선외기) 대체 지원 사업 시행 지침 1부.hwp (565 hit/ 153.5 KB) ↓

미리보기



< 이전글 **2017/2018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...** | **2017년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신청...** 다음글 >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